

대구혁신 의료R&D지구 입주가능 및 제한업종현황

구 분		의료R&D지구
산업 육성 구역	관련 규정	- 대구신서 혁신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·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-508호(2013. 8. 30)
	입주 가능 업종* 주1)	- 지역전략산업 및 광역경제권 선도산업과 관련된 시설로, 산·학·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혁신도시관리위원회가 심의·결정하는 시설 - 다음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해당하는 업종 중 의료기기 생산 및 연구개발 기관 업종 우선. 단, 지방자치 단체에서 전략적으로 유치한 업종 중 관리기관과 협의한 업종은 입주가능 · 기타 기계 및 장비 (2511 ~ 2513, 2593, 2594, 2599, 2719, 2721, 2732, 2912 ~ 2919, 2921~2926,2929) ·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(2611, 2612, 2632, 2711, 2811, 2812, 2852, 2890, 2927) · 전자부품, 영상, 음향, 및 통신기기(2621, 2622, 2629, 2631, 2642, 2651, 2652, 2830, 2841, 2842) ·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,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개발(2110, 2121 ~ 2123, 2130, 5821, 5822) · 화장품제조업(20433) - 연구개발(7011, 7012, 7212, 7291)
	입주 제한 업종	- 입주 가능 업종 외 업종 - 염색가공, 피혁, 도료주물, 안료, 염료, 시멘트가공, 농약, 타이어 및 고무제조, 석유화학, 제재업
산업지원 구역		- 「산집법」 제2조제19호에 의한 지원기관으로써,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6항의 조건을 갖춘 자 - 공공기관의 청사, 또는 공공시설

*주1)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5항제5호에 따라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이 수립된 경우 업종배치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함.